#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저작재산권 양도 표준계약서

저작재산권 양도인 _____ (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와 저작재산권 양수인 _____ (이하 "양수인"이라 한다)는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저작재산권 양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을 위해 저작재산권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의 범위와 대가 등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저작물"이란 본 계약에 따른 저작재산권 양도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로서 [별지]에 기재한 저작물을 말한다.
2. "인공지능 모델"(이하 "모델"이라 한다)이란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학습하여 입력에 대한 예측·분류·생성 등의 결과를 산출하는 알고리즘과 그 매개변수의 총체를 말한다.
3. "인공지능 학습"(이하 "학습"이라 한다)이란 모델을 개발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대상저작물 또는 가공데이터를 모델에 입력하여 매개변수를 생성·조정하는 일체의 과정(사전학습, 추가학습, 미세조정과 이를 위한 평가·검증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 대상저작물을 복제·저장하거나 기술적 처리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4. "기술적 처리"란 학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대상저작물의 형식을 변환하거나 대상저작물을 정제·라벨링·요약·재작성·토큰화·벡터화하는 등의 처리(질의응답 데이터의 생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5. "가공데이터"란 양수인이 대상저작물을 기술적 처리하여 생성한 데이터(데이터셋, 임베딩 데이터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모델 및 매개변수는 제외한다.
6. "대상모델"이란 양수인이 대상저작물을 학습에 이용하는 모델을 말한다.
7. "매개변수"란 모델이 입력을 처리하여 결과를 생성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내부 수치값으로서 가중치, 편향값 등을 말한다.

8. "산출물"이란 대상모델이 입력값에 따라 출력하는 텍스트·이미지·음성·영상·코드 등 일체의 결과를 말한다.

9. "권리관리정보"와 "기술적 보호조치"란 각각 저작권법 제2조에서 정한 권리관리정보와 기술적 보호조치를 말한다.

**제3조 (계약의 대상)**

① 대상저작물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당사자는 합의하여 [별지]에 개별 저작물을 열거하는 대신 다른 방법으로 대상저작물을 특정할 수 있다.

② [별지]에 기재되지 아니한 저작물은 본 계약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당사자는 서면 합의로 별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다음과 같다.

1. 복제권
2. 전송권
3. 기타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권리

**제4조 (대상저작물의 인도)**

① 양도인은 ___년 __월 __일까지 당사자가 합의한 방식(전송 방식, 저장 매체, 파일 규격 등)으로 대상저작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한다. 인도에는 대상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② 양도인은 자신이 대상저작물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하여 인도하거나, 양수인이 그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하는 것을 허락한다.

③ 양도인이 대상저작물을 직접 보유·관리하지 아니하여 스스로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상저작물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제3자로 하여금 제1항의 기한까지 대상저작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양수인은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양도 사실을 등록할 수 있다. 양도인은 양수인이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대상저작물 활용 범위 등)**

① 양수인은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왜곡하거나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저작인

격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대상저작물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양도인은 학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적 처리가 본 계약의 목적상 부득이한 변경임을 확인한다.

② 양수인은 학습 결과인 모델이 대상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산출물을 출력·재현하도록 설계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대상저작물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사자는 산출물의 생성·이용 제한, 학습에 이용한 사실의 표시 및 수익 분배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할 수 있다. 양수인은 본 조항이나 별도 합의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산출물의 생성·이용에 관하여 추가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양수인은 대상저작물에 부착된 권리관리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거·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학습에 필요한 기술적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 (가공데이터의 귀속)**

가공데이터에 관한 권리는 양수인에게 귀속한다. 다만 가공데이터에 대한 권리 행사는 대상저작물에 관한 양도인 또는 저작인격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조 (양도대금의 산정과 지급)**

① 본 계약에 따른 양도의 대가(이하 "양도대금"이라 한다)는 일시금 금 _____원(부가세 별도)으로 하고, 양수인은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양도인이 지정한 계좌로 양도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대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연 ( )%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제8조 (진술·보증 및 제3자 권리침해에 대한 책임)**

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보증한다.

1. 본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필요한 대상저작물에 관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저작물이 제3자의 저작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그 밖의 지식재산권 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양도인 또는 제3자가 대상저작물을 학습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식 등으로 대상저작물에 표시하였더라도 양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대상저작물을 이용하는 데 장애가 없다는 것

②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제9조 제2항의 보안조치를 이행할 기술적·관리적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진술·보증한다.

③ 제3자가 대상저작물에 관련하여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이를 안 당사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알리고, 당사자는 그 대응에 서로 협력한다. 양도인의 진술·보증 위반으로 인한 청구에 대하여는 양도인이, 양수인이 양도 범위를 벗어나 대상저작물을 이용한 것으로 인한 청구에 대하여는 양수인이 각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④ 특정 대상저작물에 관하여 제1항의 진술·보증 위반이나 권리의 흠결이 확인된 경우 양도인은 지체 없이 양수인에게 알리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필요한 권리의 확보
2. 당사자가 합의한 기준에 맞는 다른 저작물로의 교체
3. 해당 저작물의 제외와 그에 상응하는 양도대금의 감액 또는 환급

**제9조 (비밀유지 및 정보보안)**

①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상·기술상 정보와 본 계약의 내용(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본 계약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 당시 이미 공지된 정보
2.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하였거나 상대방의 정보에 의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3. 법령 또는 법원·수사기관·행정기관의 적법한 요구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

② 양수인은 대상저작물과 가공데이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접근 권한의 최소화 및 접근 기록의 보관
2. 저장·전송 시 암호화 등 기술적 보호조치

③ 양수인은 대상저작물 또는 가공데이터의 유출·침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안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양도인에게 알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제)**

① 당사자는 천재지변, 전쟁, 그 밖의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본 계약 체결 후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양도의 필요성·범위 또는 양도대금 산정의 기초가 중대하게 변경된 경우, 당사자는 계약 조건을 조정하기 위하여 성실히 협의한다. 어느 당사자가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한 날부터 (  )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종전 조건대로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계약 목적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당사자는 (  )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그 영향을 받는 부분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시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거나 위반의 성질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정 요구 없이 해제할 수 있다.

④ 양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 요구 없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어느 당사자든 해제할 수 있다.

1. 양수인이 제5조를 위반한 경우
2. 양수인이 제9조 제2항을 위반하여 대상저작물이 제3자에게 유출된 경우
3. 상대방에 대하여 파산·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해산, 영업정지 또는 주요 재산에 대한 압류·가압류·강제집행이 있어 계약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⑤ 본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 (계약 종료 후의 조치)**

① 본 계약이 해제 등의 사유로 종료된 경우, 제3조에 따라 양도된 저작재산권은 모두 양도인이 다시 양수한 것으로 본다. 양수인은 대상저작물에 대하여 이루어진 등록 및 재양도·이용허락 등을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그 지체로 양도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양수인은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대상저작물과 그 복제물(가공데이터 중 대상저작물로 복원 가능한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하며, 가공데이터를 이용하여 대상저작물을 복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양수인은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대상모델과 그 매개변수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양수인은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대상저작물을 새로 학습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유하고 있는 가공데이터는 대상모델의 유지·보수와 성능 평가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⑥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본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은 그 성질상 필요한 범위에서 효력을 유지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당사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본 계약의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양수인이 본 계약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대상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양도인은 제1항에 따른 청구와 별도로 저작권법에 따른 침해의 정지·예방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분쟁해결 및 준거법)**

①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해석하며,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저작권법, 민법 등 관계 법령과 업계 관행, 사회 통념에 따른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우선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소를 제기하기 전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한 분쟁에 관한 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로 한다.

**제14조 (계약내용의 변경, 통지, 합의, 해석의 우선순위 및 효력 발생)**

① 본 계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로만 변경할 수 있으며,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변경된 내용은 합의일 다음 날부터 효력이 있다.

② 본 계약에 따른 통지는 서면으로 하며,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나 당사자가 서면으로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보내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주소 등이 변경된 당사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아니하여 생긴 불이익은 그 당사자가 부담한다.

③ 본 계약은 그 대상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완전한 합의이며, 본 계약 체결 전에 당사자 사이에 있었던 서면 또는 구두 합의보다 우선한다.

④ 당사자는 본 계약을 보충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부속합의는 본 계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

⑤ 본문, 별지 및 부속합의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부속합의, 별지, 본문의 순서로 적용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특정은 가장 최근의 별지에 따른다.

⑥ 본 계약의 일부 조항이 무효이거나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당사자는 무효인 조항을 취지에 가장 가까운 유효한 조항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⑦ 어느 당사자가 본 계약상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를 지체하더라도 이를 권리의 포기로 보지 아니하며, 권리의 포기는 서면으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____년 __월 __일

양도인 : 성명(상호) (인)

생년월일(혹은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양수인 : 상호

대표이사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 [별지] 대상저작물 목록(필요 시 전자파일 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연번 | 제호/파일명(또는 목록 식별자, ISWC·UCI·단체 관리번호 등) | 종별 | 저작자/실연자 | 형태·규격(포맷, 용량) | 제3자 권리·부담 유무 |
|---|---|---|---|---|---|
| 1 | | | | | |
| 2 | | | | | |
| 3 | | | | | |

대상저작물의 특정 방식:

□ 개별 목록 □ 양도인이 관리하는 저작물의 전부 또는 범주(  )